2019년도 제15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자 : 2019. 8. 16.(금요일)

o 방　　법 : 온라인심의

o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전응준 위원(분과위원장), 박성호 위원, 임진모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의결안건〉 ※ 안건 검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Ⅱ. 회의내용 및 결과

o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20건(안건번호 제2019-92851호~92950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주요내용

- A 위원 : 92851호부터 92950호까지 100건의 경우 최신음악과 만화에 대한 무단 복제 전송이므로 시정권고 가결함

- B 위원 : 이번에 불법 복제 전송이 문제된 심의안건들은 음악, 만화에 관한 사안들입니다. 예컨대 음악 인사(가수 멜로방스), 음악 열대야(Fever)(가수 여자친구) 등, 만화 변변찮은 마술강사와 금기교전(출판 디앤씨미디어), 만화 우리는 공부를 못해(출판 학산문화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음악, 만화의 불법 복제 전송물들은 모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검토보고서의 원안대로 모두 시정권고 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C 위원 : 본건 심의대상물은 불법복제된 음악, 만화 등의 저작물로서, 합법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고 그외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바, 시정권고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2019년 제155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8. 16.

분과위원장 전응준

위원 박성호

위원 임진모